

구급차등 운용 통보(신고)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	7일	
운용기관	명칭			전 화 번 호			
	소재지						
소유자 (대표자)	성명			생년월일			
	주소						
구급차등 구분	[] 특수 구급차, [] 일반 구급차, [] 선박, [] 항공기						
	공통	등록번호					
		제작연도					
	구급차	차대번호					
자동차 최초등록일							

의료장비 등 보유현황

연번	명칭	규격	수량	연번	명칭	규격	수량
1				6			
2				7			
3				8			
4				9			
5				10			

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급차등의 운용을 통보(신고)합니다.

년 월 일

소유자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제출서류	1. 「항공안전법」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(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(응급환자 이송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 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「자동차관리법」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「선박법」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	

처리절차

이 통보(신청)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